

4 기획

# 휴학한 학생, ‘대표’ 지위 인정 안 돼 “시대상 반영한 유연한 적용 필요”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 학업과 자치활동을 병행하기 힘든 상황에서 학생 대표들의 휴학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우리학교의 경직된 규정에 따라 휴학생이 된 학생 대표의 지위는 교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그 사례를 살펴본다.

## 대학평의회·등록금심의위원회 휴학한 학생 대표 참여 못 해

대학평의회(평의회)는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 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대학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나열된 심의사항이 모두 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평의회에는 3명의 학생이 소속돼 있다. 하지만 대학평의회운영규정 제3조 3항에 따르면 조교 및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평의회에 소속된 학생 의원이 휴학할 경우 의원 자격은 즉시 상실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규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등심위는 ▲교원 2명 ▲직원 2명 ▲재학생 4명 ▲대학 등록금회계 관련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학생 위원의 자격은 재학생으로 한정돼 있다. 평의회 규정과 마찬가지로 학생 위원에게 휴학 및 졸업 등의 신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학생 위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해당 규정에 대해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 김동준 팀장은 “학생 대표는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표해야 하는데 휴학생이나 수료생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 박승우 계장은 “특히나 수료생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데, 만약 구성단위에 들어와서 갑자기 등록금 10% 올리는 데 동의한다고 하면 재학생들의 반감이 크지 않겠냐”고 밝혔다.

### | 대학평의회 규정 |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2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1. 교원                      |      | 8명 |
| 2. 직원                      |     | 5명 |
| 3. 조교                      |    | 1명 |
| 4. 학생                      |    | 3명 |
|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  | 4명 |

※ 조교 및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

① 위원회는 각 구성단위의 추천을 받아 교원·직원·학생을 대표하는 자 및 대학등록금회계 관련 전문가로 다음과 같이 총장이 위촉한다.

|                    |                                                                                               |                                                                                                |
|--------------------|-----------------------------------------------------------------------------------------------|------------------------------------------------------------------------------------------------|
| 1. 교원              |            | 2명                                                                                             |
| 2. 직원              |            | 2명                                                                                             |
| 3. 재학생             |  (대학원생) 2명 |  (학부생) 2명 |
| 4. 대학 등록금회계 관련 전문가 |          | 2명                                                                                             |

대학평의회운영규정에 따라 재학생이 아닌 학생대표는 평의회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 수료생 신분이던 전 총학생회장 실제로 참여 못 해

대학의 발전 방향 자체는 궁극적으로 학생과 교육을 향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평의회와 등심위에 학생 위원의 참여는 보장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민주적인 절차로 학생 사회에서 선출된 학생 대표는 휴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상실한다. 대학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은 자주적인 학생자치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과도한 제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실제로 제54대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은 큰 난관에 처한 적이 있다. 지난해 선거 무산으로 임기를 연장한 전 회장은 당시 수료생 신분이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전 회장은 평의회와 등심위에 참여할 수 없었다.

당시 전 회장은 평의회 의원으로 회의에도 참석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평의원 중 누군가가 해당 규정에 의거해 전 회장을 평의회 의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고, 전 회장의 지위는 박탈됐다. 갑작스런 지위 박탈에 전 회장은 평의회에 문의했지만, “앞으로는 규

정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 회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작년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없었고, 크게 심의할 사항들이 없어서 지나쳤다”면서도 “평의회에서 많은 것을 다루는 만큼 학생들에게 직격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냥 넘어간다면 큰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학생 대표 휴학 관련 규정 학생회칙은 마련돼 있어

국제캠 총학생회칙 제9조에 따르면 대표자의 휴학과 관련된 내용이

예외적으로 명시돼 있다. 재학생으로서 학업의 어려움과 학생회 활동의 제약이 있기에 대표자는 사유를 명시한 휴학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휴학할 시에도 그 권한과 의결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요지다. 학생들의 동의하에 학생 대표는 휴학할 시에도 그 권리는 정당하게 보장받고 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인근에 위치한 한국외대 또한 2018년부터 서울캠 총학생회칙 ‘정회원등록제’를 신설했다. 휴학생이나 졸업유예생 신분이더라도 학생자치활동을 재학생과 동일하게 할 수 있음을 회칙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학교와 한국외대 모두 휴학생인 학생 대표는 학생들에게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회의체에서 위원 자격이 박탈된다.

전 회장의 사례와 비슷하게, 2023학년도 1월 1일 임기를 시작한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3월 복학 예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으로 인해 회의체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총학은 반발하며 참석 공문을 발송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총학은 이를 문제로 삼아 구시대적인 학칙을 근거로 총학생회장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 본부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부착한 바 있다.

이에 여러 학생 대표들은 회의체에서 휴학생인 학생 대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외대 서울캠 총학 배귀주 회장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일은 올바른 것”이라며 “학생사회 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의 적합성을 학교 본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동의를 표한 경영대학 학생회 송원섭(경영학 2018) 회장 역시 “현실적으로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도저히 학업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해 휴학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봤다”며 “대평의에서 재학생 신분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부득이한 휴학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넓히는 것 또한 방법이 아니겠냐”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평의회를 구성하는 다른 구성 단위 대표한테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의견을 가지고 교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어느 대학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없다”고 전했다.